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5호의2 서식]

긴급응급조치 변경 통지서(보호 대상자 교부용)

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1. 변경된 긴급응급조치 내용
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비고: *접근금지 장소가 000에서 000으로 변경됨, 1호 결정에서 1호, 2호 결정으로 변경됨 등*

2. 긴급응급조치의 기간

< 긴급응급조치 관련 안내 사항 >

□ 위와 같이 긴급응급조치 하였으니 스토킹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12에 신고하시면 출동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**위반 예시**

-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관련

 ▸ 귀하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
 ▸ 귀하의 주거, 직장,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

-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관련

 ▸ 귀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
 ▸ 귀하가 주거, 직장,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
 ▸ 귀하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 등을 발송한 경우

- 위 예시 이외에도 행위자가 귀하에게 접근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있다고 적발된 경우

□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,

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법경찰관 (인)